#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인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65

발의연월일: 2021. 4. 22.

발 의 자:권인숙·강득구·김철민

김홍걸 • 박찬대 • 서동용

소병철 • 유기홍 • 윤영덕

이탄희 · 홍성국 의원

(119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2013년 서울행정법원은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임을 재확인함으로써,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,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교육감 직접 고용을 권고한 바 있음.

하지만, 현행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각급학교의 장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, 학교 사정에 따라 이들의 근무조건이나 재고용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,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'보조인력'이라고 칭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처우나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'보조인력'을 '지원인력'으로 변경하고, 채용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인력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제3항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상담지원·가족지원·치료지원·보조인력지원·보조 공학기기지원·학습보조기기지원·통학지원"을 "상담지원·가족지원· 치료지원·지원인력배치·보조공학기기지원·학습보조기기지원·통학 지원"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"보조인력의 지원"을 "지원인력의 배치"로 한다.

제28조제3항 중 "각급학교의 장"을 "교육감"으로, "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"를 "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배치하여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중 "보조인력의 지원"을 "지원인력의 배치"로 한다.

제30조제2항제3호 중 "교직원·보조인력"을 "교직원·지원인력"으로 한다.

제31조제1항제2호 중 "교육보조인력"을 "교육지원인력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보조인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보조인

력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인력으로 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<u>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특수교육 관련서비스"란 특	2
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	
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	
요한 인적·물적 자원을 제	
공하는 서비스로서 <u>상</u> 담지원	<u>상</u> 담지원
·가족지원·치료지원·보조	·가족지원·치료지원·지원
인력지원・보조공학기기지원	인력배치・보조공학기기지원
· 학습보조기기지원 · 통학지	· 학습보조기기지원 · 통학지
<u>원</u>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	<u>원</u>
한다.	
3. ~ 12. (생 략)	3. ~ 12. (현행과 같음)
제21조(통합교육) ① (생 략)	제21조(통합교육) ① (현행과 같
	유)
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	②
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	
장은 교육과정의 조정, <u>보조인</u>	<u>지원인력</u>
력의 지원, 학습보조기기의 지	<u>의 배치</u>
원,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	
교육계획을 수립・시행하여야	
한다.	<u>.</u>

- ③ (생략)
- 제28조(특수교육 관련서비스) ① •② (생 략)
  - ③ <u>각급학교의 장</u>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하여 <u>보조인력을</u> 제공하여야 한다.
  - ④ (생략)
  -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, 통학비 지원, 통학 <u>보조인력의 지원</u>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⑥ ~ ⑨ (생 략)
- 제30조(장애학생지원센터) ① (생략)
  - ② 장애학생지원센터(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갈음하는 경우에 는 이를 말한다)는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담당한다.
  - 1. 2. (생략)
  - 3. <u>교직원·보조인력</u>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
  - 4. 5. (생략)
  - ③ (생 략)
- 제31조(편의제공 등)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

③ (현행과 같음)
제28조(특수교육 관련서비스) ①
• ② (현행과 같음)
③ 교육감
필요한 경우 지원인력
을 배치하여야
④ (현행과 같음)
⑤
지원인력의 배치
⑥ ~ ⑨ (현행과 같음)
제30조(장애학생지원센터) ① (현
행과 같음)
②
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교직원·지원인력
4.·5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제31조(편의제공 등) ①

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 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<u>교육보조인력</u> 배치 등의 인적 지원
- 3. ~ 5. (생 략)
- ②·③ (생 략)

		_	_	-	_	_	_	_	_	_	_	_	_	-	_	_	_	_	_	_	_	_	_	_	_	_
	-	_	_	_	_	_	_	_	_	_	_	_	_	-	_	_	_	_	_	_	_	_	_	_	_	_
	_	_	_	_	_	_	_		_	_	_	_	_	_		_		_	_		_	_	_	_	_	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교육지원인력-----
- 3. ~ 5. (현행과 같음)
- ②・③ (현행과 같음)